상생패키지론 업무협약서

(구매기업용)

주식회사 **하나은행** 앞

주식회사 하나은행(이하 "은행"이라 함)과 _____(이하 "구매기업"이라 함)은 상호협력하여 구매기업의 협력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 등의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한 은행의 **「상생패키지론 결제제도」**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기업 상호지원 업무협약(이하 "이 협약"이라 합니다)을 체결하고 이 협약에 「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」, 「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」 및 「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」이 적용됨을 승인합니다.

제 1 조 (목적)

이 협약은 협력기업의 원활한 납품을 위한 생산자금 등의 지원, 협력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의 지급 지원 및 2 차 이하의 협력기업(이하 "벤더기업"이라 함)의 유동성 지원 등을 위하여, 은행이 구매기업, 협력기업 및 벤더기업에 대하여 「상생패키지론」 결제제도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 2 조 (결제제도의 구성)

① 「상생패키지론」 결제제도를 통하여 이용 가능한 기업 간 결제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.

1. 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
2. 상생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(협력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 있는 방식(With Recourse))
3. 상생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(협력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(Without Recourse))
4. 상생 e-안심팩토링 (협력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(Without Recourse))
5. 상생일반구매론
6. 상생벤더구매론

② 제 1 항 각 호의 결제제도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.

1. 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 + 상생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(WOR 또는 WR) + 상생벤더구매론
2. 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 + 상생 e-안심팩토링 + 상생벤더구매론
3. 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 + 상생일반구매론 + 상생벤더구매론
4. 기타 제 1 항 각 호의 결제제도 중 2 이상을 결합한 것으로서 은행이 인정하는 방식

제 3 조 (구매기업의 의무 및 제한사항)

① (발주명세에 대한 지급의무)

구매기업이 대금지급확약비율을 지정하여 은행에 전송한 발주명세에 대하여 은행이 협력기업 앞으로 제 2 조에서 정한 방식으로 대출을 취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은행에 지급하여야 합니다.

1. **협력기업과의 납품 계약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경우**
2. **협력기업이 납품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**
3. **협력기업이 납품한 물품 등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**
4. **구매기업이 협력기업에 대하여 그 납품대금을 변제하는 등 납품대금 채무가 소멸되는 경우**
5. **구매기업이 협력기업에 대하여 반대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**
6. **협력기업의 채권자로부터 압류, 가압류가 있거나 협력기업이 제 3 자에게 납품계약을 양도한 경우**
7. **세무서 등으로부터 체납처분 통지를 받는 등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**
8. **전산조작오류 등 발주명세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**
9. **구매기업이 협력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채무의 성립, 존속,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거나 기타 은행이 협력기업 앞으로 취급한 대출금의 회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**

② (외상매출채권의 담보 활용 등에 대한 동의)

구매기업은 자신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협력기업이 은행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담보 활용하거나, 상생일반구매론에 따른 지급승인을 근거로 하여 협력기업이 상생벤더구매론에 의한 새로운 지급승인을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이 협약에 따른 제반 업무절차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니다.

③ (상생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통한 채권확정시의 제한사항 및 지급의무)

5-06-0589(1 - 3) (2016.06.07개정)
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6-약관-269호
(보존년한:완제일로부터5년)

1. 협력기업은 구매기업으로부터 통보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 활용하여 벤더기업으로부터 구매한 물품 등의 납품대금 결제를 위하여 은행과 별도 약정한 “상생벤더구매론” 여신(한도)금액 범위 내에서 은행에 상생벤더구매론에 따른 지급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2. **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 활용하여 은행이 벤더기업에게 지급승인한 외상매출채권 금액에 대하여는 협력기업의 추가적인 대출 취급이 제한되며, 구매기업은 외상매출채권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없기로 합니다.**
3. **협력기업이 상생벤더구매론을 지급승인하기 위하여 담보 활용한 외상매출채권 금액은 “상생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업무협약서(기업용)”에서 약정한 “협력기업에 대한 총 대출한도”의 대출 취급 잔액에 포함됩니다.**
4. **구매기업은 협력기업이 상생벤더구매론을 이용한 경우에도, 외상매출채권의 지급기일에 대금을 변제하기로 하며,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“상생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업무협약서(기업용)”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 및 방법으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부담하기로 합니다.**

④ (상생 e-안심팩토링을 통한 채권확정시의 제한사항 및 지급의무)

1. 협력기업은 구매기업으로부터 통보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 활용하여 벤더기업으로부터 구매한 물품 등의 납품대금 결제를 위하여 은행과 별도 약정한 “상생벤더구매론” 여신(한도)금액 범위 내에서 은행에 상생벤더구매론에 따른 지급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2. **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 활용하여 은행이 벤더기업에게 지급승인한 외상매출채권 금액에 대하여는 협력기업의 추가적인 대출 취급이 제한되며, 구매기업은 외상매출채권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없기로 합니다.**
3. **협력기업이 상생벤더구매론을 지급승인하기 위하여 담보 활용한 외상매출채권 금액은 “상생 e-안심팩토링 업무협약서 (기업용)”에서 약정한 “협력기업에 대한 총 대출한도”의 대출 취급 잔액에 포함됩니다.**
4. **구매기업은 협력기업이 상생벤더구매론을 이용한 경우에도, 외상매출채권의 지급기일에 대금을 변제하기로 하며,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“상생 e-안심팩토링 업무협약서(기업용)”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 및 방법으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부담하기로 합니다.**

⑤ (상생일반구매론을 통한 채권확정시의 제한사항 및 지급의무)

1. 협력기업은 구매기업이 전송한 지급승인명세에 따라 은행의 지급승인이 있는 때에 벤더기업으로부터 구매한 물품 등의 납품대금 결제를 위하여 은행과 별도 약정한 “상생벤더구매론” 여신(한도)금액 범위 내에서 은행에 상생벤더구매론에 따른 지급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2. **은행이 벤더기업에게 지급승인한 지급승인금액에 대하여는 협력기업의 추가적인 선입금 또는 벤더입금이 제한되며, 구매기업은 지급승인명세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없기로 합니다.**
3. **협력기업이 상생벤더구매론을 이용한 경우, 결제일에 구매기업 명의의 당일만기대출을 실행하여 상생벤더구매론을 상환하기로 합니다.**

⑥ 협력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없는 방식(Without Recourse)의 결제제도를 통하여 외상매출채권내역을 전송하고 협력기업이 상생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또는 상생 e-안심팩토링에 따른 전자방식 외상채권대출을 받거나, 상생일반구매론에 의한 지급승인을 근거로 상생벤더구매론에 의한 새로운 지급승인을 하는 경우에는, 결제일에 구매기업 명의의 당일만기대출을 실행하여 협력기업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구매기업이 변제의무를 부담합니다.

제 4 조(협약서의 효력)

① 이 협약의 효력은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생하고 별도로 서면에 의한 해지통지가 없는 한 유효하기로 합니다.

② 제 1 항의 경우 상대방이 해지통보를 수령하기 전까지 구매기업이 「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 업무협약서」, 「상생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업무협약서」, 「상생 e-안심팩토링 업무협약서」 또는 「상생일반구매론 계약서」에 따라 통지한 발주명세, 외상매출채권 명세, 승인명세에 대하여는 해당 만기일까지 이 협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니다.

③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상충되는 사항은 「상생패키지론」 결제제도를 통하여 이용 가능한 각각의 기업간 결제제도의 협약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한 바에 따릅니다.

제 5 조(협약의 체결 및 변경)

① 이 협약과 관련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,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②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
5-06-0589(2 - 3) (2016.06.07개정)
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6-약관-269호
(보존년한:완제일로부터5년)

③ 필요한 경우 은행과 구매기업은 협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제 6 조(관할법원의 합의)
이 협약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은행의 본점, 지역본부 또는 구매기업의 거래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

제 7 조(기타 특약사항)

(서명날인)

이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 부를 작성하여 은행과 구매기업이 각각 1 부씩 보관합니다.

20 년 월 일

(은행)

주식회사 하나은행 _____(인)

주 소 :

(구매기업)

회사명 :_____(인)

주 소 :

5-06-0589(3 - 3) (2016.06.07개정)
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6-약관-269호
(보존년한:완제일로부터5년)